



(사)가족기업학회 2023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총회

2023. 4. 27

목 차

I. 개회선언	
II. 회장인사	
III. 감사패 전달식	
IV. 경과보고 및 사업보고	
1. 경과보고	
2. 사업보고	
V. 학회 재정 현황 및 회원가입	
1. 학회 재정 현황	
2. 회비 및 임원 분담금 현황	
3. 회원가입 및 입금계좌 안내	
VI. 의결안건	
의안 1. 정관 개정의 건	
의안 2. (사)가족기업학회 윤리규정 개정(전면개정)의 건	
의안 3.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개정(전면개정)의 건	
의안 4.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의 건	
의안 5. 감사선임의 건	
의안 6. 편집위원장 선임의 건	
- 2023년도 편집위원 현황	
VIII. 공지사항 및 기타 논의사항	
IX. 폐회	
[별첨]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정관	
[연구윤리 교육자료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연구윤리 교육자료 2]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한국연구재단)	

I. 개회선언

회의를 이사회와 총회로 각각 개최하지 않고 함께 진행합니다. 본 학회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에서 이를 의결을 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번 회의는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할 의안이 총회에서도 의결됩니다.

II. 회장인사

III. 감사패 전달식

1. 남영호 초대 회장
2. 송덕근 초대 사무국장

IV. 경과보고 및 사업보고

1. 경과보고

1) 2021년 학회설립 관련 안내

- 02. 25. :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인가(중소벤처기업부)
- 03. 25 :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법인 등기
(법인등록번호 : 131421-0008856)
- 04. 02 : 고유번호증 발급(국세청 고유번호 147-82-00265)
- 06. 16 : 춘계학술대회(창립총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 06. 16 :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현판식(장소 : 경기도 안산시)
- 12. 31 : 공익법인 지정 등록(승인)(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2) 2023년도 학회운영 경과보고

- 01. 01 : 제2대 회장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 취임
- 01. 14 : 인수인계(산들해반포) 남영호 전임회장, 윤병섭 회장 외
- 02. 07 : 등기, 고유번호증, 통장 등 변경
- 02. 13 : 홈페이지유지보수계약(계약대상자: 디스트레스)
- 02. 24 : 중소벤처기업부 결산보고
- 02. 28 : 연구 논문 지원 사업 공개 모집
 - ▶ 공모대상 : 가족기업학회 전 회원(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가능)
대학원생,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등 모두 포함
 - ▶ 공모기간 : 2023. 2. 28.(화) ~ 2023. 3. 31(금)
 - ▶ 공모주제 : 가족기업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업승계, 장수기업 등 모두 포함)
 - ▶ 공모과제수 : 총 5 편
 - ▶ 지원금액 : 과제당 백만원 (총 5백만원)
 - ▶ 응모접수 : 학회 편집위원회 E-mail 접수
 - ▶ 연구계획서 제출 : A4 2-3매 분량(자유양식이나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방법, 참고문헌 등 포함)
- 04. 12 : 공익법인전용계좌신고(안산세무서)
- 04. 27 :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 05. 02 :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및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예정(안산세무서)
 - ▶ 홈택스 제출
 - ▶ 각 연도별 모든 출연재산 1년 30%, 2년 70% 이상 소진 의무
- 06. 30 : 2023년 가족기업학회 뉴스레터 발간 예정

2. 사업보고

1) 2023년도 학회지발간 사업(연 2회(6월, 12월) 발행) 진행 현황

- 2022. 09. 30 : 『가족기업연구』 제1권 제1호 발간(총 5편 수록)

- ▶ 남영호, 경영학의 떠오르는 새로운 연구영역 : 가족기업
- ▶ 윤병섭, 가족기업 소유구조가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 ▶ 김우종, 가족 간 갈등이 패밀리 창업기업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 및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
- ▶ 김병진, 가족기업 CEO의 DISC 행동유형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 Yeon Hwang, A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r's Competency and Leadership Characteristics of Small and Medium Venture Firms on Innovation Activities and Performance

- 2023. 06. 30 :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1호 발간 예정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진입을 위한 편집규정 개정 추진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진입을 위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보강

2) 학회지발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제정

- 2023. 04. 27 :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 ▶ 우수논문상
 - ▶ 우수논문발표상
 - ▶ 가족기업경영대상

3) 2023년도 학술행사(춘계학술발표대회) 사업 진행 현황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09:30~16:5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상생룸(2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 대주제 : 대전환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 방향
 - ▶ 축사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 ▶ 기조발제 :
라정주((재)파이티치연구원장),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김희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 ▶ 지정토론 :
좌장(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토론(발제자 2명, 토론자 5명)

조봉현 부행장(IBK기업은행)
송공석 이사장(한국육실자재산업협동조합)
김소희 회장(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중소벤처기업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논문 : 2개 Session, 4편 논문발표
 - ▶ 좌장 : 2명/ 발표자: 4명/ 토론자: 4명
- 후원 :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협찬 : 한국부동산원, 서전엔지니어링

4) 학술연구 사업

임원 및 회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VI. 의결안건

의안 1. 정관 개정의 건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공익사업의 수행 및 지원</p>	<p>제4조(사업) 8.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공익사업의 수행 및 지원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p>	<p>자구정리</p>
	<p>제4조의 1(기구)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장이 다음과 같은 15개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p> <p>1. 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2. 학술위원회: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3. 포상위원회: 본 학회는 학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포상위원회를 두어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선정 및 기타 포상에 관련한 심의를 담당하며,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을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4. 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학회 차원에서 조사·처리하기</p>	<p>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p>

	<p>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5. 가족기업연구위원회: 본 학회의 가족기업 관련 심도 있는 연구, 정부의 가족기업정책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제언 청취 및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연구 등을 위하여 가족기업연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6. 산학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7. 재정위원회: 본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학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8. 기획위원회: 본 학회의 사업에 활동을 기획 및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9. 국제협력위원회: 본 학회의 해외 선진 국가 및 학자와의 교류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10. 홍보위원회: 본 학회의 주요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과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홍보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제11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u>약간명</u>, 산학부회장 <u>약간명</u>, 상임이사</p>	<p>제11조(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u>부회장 50인</u> 이내, 산학부회장 50인 이내, 상</p>	<p>임원증원</p>

와 이사는 각각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임이사 50인 이내, 이사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의1(기구) 위원장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0조의2(경비의 목적)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제20조의1(경비의 목적)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조문조정
제20조의3(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0조의2(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4 장 총회 와 이사회	제4장 총회와 이사회	
각 조문 띄어쓰기 예시) 제 1 조 (명칭)	각 조문 붙여쓰기 예시) 제1조(명칭)	띄어쓰기 조정
각 절 붙여쓰기 예시) 1.본회의 임원은	각 절 띄어쓰기 예시) 1. 본회의 임원은	

의안 2. (사)가족기업학회 윤리규정 개정(전면개정)의 건

<p>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현 규정)</p> <p style="text-align: right;">제정 2022년 2월 21일, 이사회 의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에서 발행하는 가족기업연구 및 기타논문집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윤리 등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진실성 및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p> <p>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p>
--

③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⑥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⑦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인

② 위 원: 5인 이상 9인 이내

③ 간사: 1인

제5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장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위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단,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도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⑥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⑦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연구윤리의 심의와 관련되어 득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한다.

제8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과 후속조치

제9조(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학회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방해, 그리고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할 수 있다.

제10조(제보, 접수, 조사 및 심의요청)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의결과정을 통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존재하지 않은 연구내용의 위조 및 변조

②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는 표절

③ 여러 학술지에 논문 고유한 창작성을 갖지 않은 채 중복 게재하는 경우

④ 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정리하여 투고하는 경우로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미포함되는 경우

⑤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기타(예: 부적절한 집필행위,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텍스트의 재활용 등) 연구윤리 위반 사항

제12조(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③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5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제13조(소명기회의 보장 및 비밀보호)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징계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논문의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향후 논문투고 금지: 3년

3. 가족기업학회 홈페이지에 내용 공지

4. 한국연구재단에 세부적 조치사항 통보

- 5. 회원 자격 정지: 3년
- 6. 기타 본 위원회의 결정

제15조(행정사항)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②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이 규정의 개정은 (사)가족기업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④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전면개정 (사)가족기업학회 윤리규정

(사)가족기업학회 윤리규정

제정 2022년 2월 21일, 이사회 의결
 전면개정 2023년 4월 27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가족기업학회 회원 및 가족기업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논문을 하나 이상의 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도 포함, 이하 동일)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4조(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중복게재)

- ①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② 학술회의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 ③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해야 한다.

제7조(인용방법)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할 윤리규정

제8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9조(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지득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이용하는 것은 선취권을 탈취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위원회

제10조(윤리위원회의 역할)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11조(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요청)

-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 ①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제16조의 재심의 또는 재심의 요청 기간 경과 후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3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도 금지한다.

제16조(재심의)

-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 기피,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특정 위원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따라 제적,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3.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개정(전면개정)의 건

<p>가족기업연구 편집 규정</p> <p>제정 2021년 8월 26일, 이사회 의결</p> <p>제1장 총칙</p> <p>제1조(명칭)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라 한다.</p> <p>제2조(목적) 본 편집위원회는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의 「가족기업연구」(Korean Family Business Review)의 발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세칙) 「가족기업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p> <p>제2장 편집위원회</p> <p>제4조(임무) 편집위원회는 「가족기업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 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가족기업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p>
--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게재여부 판정
- ② 논문 게재 순서의 조정
- ③ 「가족기업연구」의 편집
- ④ 기타 「가족기업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가족기업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가족기업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명의 편집위원장(공동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② 가족기업학회의 평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최근 10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해외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환산율은 가족기업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임) 편집위원은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가족기업학회장이 임명한다.

-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전공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포함)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3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해외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환산율은 가족기업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은 매년 과반수가 교체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가족기업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제11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족기업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 연구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회원이어야 하며,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 신청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④ 게재신청자는 투고 전에 연회비 및 투고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본문에는 저자와 관련된 사항을 일체 명기하지 않는다.

제12조(논문 저자 표시)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하여 그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 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가족기업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기업연구」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게재신청서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② 「가족기업연구」의 게재신청서 및 투고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 ① 「가족기업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편집규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 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게재신청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투고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게재확정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6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심사의의뢰)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기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해당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2명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 ② 심사자와 논문 작성자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중맹검 심사(double-blinded review)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자에게 기고된 논문의 저자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제18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가족기업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이 재임기간 투고한 논문은 타 공동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한다. 단, 단독 편집위원장이 경우에는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

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제21조(심사의견)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간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일부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게재반대),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반대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논문심사의견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부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 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4. 게재 반대: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반대의 사유를 게재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결과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를 최종결정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수정논문 제출과 재심사)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은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2인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심사위원 수정요구사항 반영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게재신청자는 투고료를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 ③ 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하되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표> 「가족기업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표> 「가족기업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

제1, 제2심사자		제3심사자	처리
A	A	-	게재 확정
A	B	-	수정 내용을 확인 후 게재 확정
A	C	-	수정 내용을 확인 후 게재 확정
A	D	A	편집위원장의 수정 확인으로 게재 확정
A	D	B	수정 내용을 확인 후 게재 확정
A	D	C	수정 논문에 대한 제3심사자의 심사로 판정
A	D	D	게재 반대 확정
B	B	-	수정 내용을 확인 후 게재 확정
B	C	-	수정 논문에 대한 제1, 제2심사자의 심사로 판정
B	D	A	편집위원장의 수정 확인으로 게재 확정
B	D	B	수정 내용을 확인 후 게재 확정

B	D	C	수정 논문에 대한 제3심사자의 심사로 판정
B	D	D	게재 반대 확정
C	C	-	수정 논문에 대한 제1, 제2심사자의 심사로 판정
C	D	-	게재 반대 확정
D	D	-	게재 반대 확정

주: A=게재가, B=수정후게재, C=수정후재심사, D=게재불가

제25조(투고료 및 게재료)

- ① 논문게재 신청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투고료와 정회원의 경우 미납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 통보된 논문의 저자는 게재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료 및 회비를 미납한 게재신청자의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재료 미납의 경우에도 게재를 이월할 수 있다. 투고료, 회비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

제5장 논문발행

제26조(논문게재대상)

-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완료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투고일 및 게재확정일 등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9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30조(후원기관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31조(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2조(논문의 판권)

-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 배포권을 가족기업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기업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제33조(논문의 반환) 게재 신청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4조(논문집 및 별쇄본의 배부)

- ① 「가족기업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가족기업연구」 및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가족기업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및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5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 「가족기업연구」의 논문을 가족기업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6조(논문게재 예정 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논문게재 예정 증명 서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면개정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가족기업연구』 편집규정

제정 2021년 08월 26일, 이사회 의결
전면개정 2023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가족기업연구(Korean Family Business Review)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가족기업연구의 편집, 심사 등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방향)

- ① 가족기업연구는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기업승계 사례, 가족기업 투자 등 일련의 가족기업 경영분야와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②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가족기업 경영관련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세칙) 가족기업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편집 등 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기업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각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법인의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④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의 5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제5조(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가족기업연구의 편집
4. 기타 가족기업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7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연2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학술지 정기발행을 위해 본 규정 제21조에 의해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8조(논문게재신청제한)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재임기간 중에 가족기업연구에 논문을 게재신청해서는 안된다.

제3장 논문게재신청

제9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의 적합성)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한 자 및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제도 및 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 ④ 논문이 외국연구(미발표논문 포함)의 단순한 반복수행에 해당되어 새로운 공헌도가 없는 경우 또는 국내외 선행연구(미발표논문 포함)가 있으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존재여부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논문게재신청)

- ①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학회의 홈페이지(<http://fb.or.kr>)로 제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우송할 수 있다.
- ② 가족기업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서약서양식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 등 인간대상연구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제4항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논문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저자 본인이 인간대상 설문조사나 실험연구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자료를 활용한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결과서 또는 심의면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논문작성요령)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① 논문작성의 기본원칙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논문언어] 논문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학술용어는 가능하면 한글로 쓰고 번역된 용어는 ()안에 원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편집도구] 논문은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편집한다.
 3. [논문편집용지] 논문의 편집용지는 A4용지 크기로 한다.
 4. [논문분량] 논문분량은 논문본문, 도표, 참고문헌, 기타를 포함하여 총 A4용지 30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논문의 논문표지, 논문제목, 저자표시, 국문요약문, 주제어표시, 본문, 게재중복신청확인표시, 참고문헌, 영문요약문, 부록(설문지 등)의 순서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다만, 부록은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1. [논문표지]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하는 논문에는 별지의 논문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논문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논문제목만을 표기하며, 연구자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게재 확정되었을 때 저자명, 근무처, 직위, E-mail, 연락전화번호, 연구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표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제1저자)를 구분하고 별도로 연락저자명(교신저자명)을 표기한다.
 2. [논문제목]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I, II, III ... 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 2, 3. ... 가, 나, 다, ..., (1), (2), (3),..., (㉠), (㉡), (㉢), ... 방식으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굴림체로 하되, 각 제목마다 글자크기를 다르게 한다.
 3. [저자표시] 저자는 논문표지에만 표시해야 한다. 논문표지 외에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및 본문에는 익명의 심사를 위하여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저자명을 표시하지 않아야 하

며, 저자명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면 안된다.

4. [논문요약문] 논문표지의 다음 쪽에서는 논문제목과 국문요약문을 표기하며, 마지막 쪽에는 영문요약문을 표기한다. 국문요약문은 1000자 이내로 하되 논문표지 다음 쪽의 논문제목과 논문본문 사이에 놓이도록 하되, <요약>이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영문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논문말미에 놓이도록 하되, <Abstract>라고 굵은 글자체로 표기하고 요약문의 내용을 작성한다. 논문의 요약문은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공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요약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5. [주제어] 논문의 국문요약문 및 영문요약문의 바로 밑 난외에 3내지 5단어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주제어는 굴림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6. [논문본문] 논문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하며, 문단 첫줄의 들여쓰기는 10pt로 한다.
7. [표, 그림]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와 그림의 바로 위에 고딕체로 표기하되, 제목앞에는 각각 <표 1> 및 <그림 1>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는 필요하면, 해설과 출처 등을 표시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굴림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로 하고, 본문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8. [주석] 주석은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며, 문헌인용은 본문에 기재하고 주석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주석은 본문에 삽입할 경우 본문 내용이 난해해지거나 설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주석은 바탕체, 글자크기 9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
9. [약자, 영문표기] 기관이름,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예)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 외부감사대상기업(외감기업)
10. [문헌인용] 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1) 논문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문장이 있는 경우 문장의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저자명, 발행연도 및 쪽수를 표기한다.
(예) (김가족 1989)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김가족 1989, 27)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김가족·이가족 1990, 217-218)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김가족 외 1988, 12)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이용
(김경영 외 1988, 12; 오성·한음 1990, 217) - 둘 이상의 문헌인용
(김경영 1999a, 12; 1999b, 22) - 같은 연도의 동일 저자에 대한 문헌인용
(Kim 2005)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 120) - 단독연구의 문헌인용(p. 혹은 pp.은 표시하지 않음)
(Kim and Lee 2005) - 2인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et al. 2005) - 3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4; Lee 2005) - 둘 이상 다른 저자의 문헌인용
(Kim 2004, 2005) - 동일인 단독연구의 둘 이상 문헌인용
(Kim 2005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의 문헌인용
(Kim 2005b; Lee 2004a) - 동일연도 동일인 단독연구가 둘인 경우 문헌인용

(AICPA Cohen Commission Report 1977) - 기관보고서의 인용

I.R.C. § 1248(a) - 미국세법 법률인용

Treas. Reg. § 1.1248-3(a)(4) - 미국세법 시행령인용

Rev. Rul. 82-1, 1982-1 CB 417 - 미국세법 시행규칙인용

2) 논문본문에서 저자명을 직접 언급할 때에는 저자명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발행연도를 표기한다.

(예) 홍가족(2003)에 의하면, ……

Beaver(2002)에 의하면, ……

11. [연구윤리규정준수확인]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2.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논문의 본문에서 인용된 것만 표시해야 하며, 인용되지 않고 단순히 참고한 것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서적과 논문의 구별없이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문헌은 ABC 순으로 각각 배열한다. 서적의 이름은 동양문헌의 경우 「」로,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제목은 동양문헌은 “ ”로 표기한다.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의 인용방식을 따른다. 같은 저자의 문헌을 같은 연도에 2개 이상을 인용한 경우 연도표시는 2002a, 2002b 등으로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 저자명은 Family name을 먼저 표기하고, 공동저자의 저자명은 그렇지 않다. 참고문헌은 바탕체,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기준으로 한다(참조: 아래 영문문헌의 일부는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의 기고요령을 참조했음).

(예) 김가족. 2000. “한국가족기업의 원가하방경직성에 관한 연구”. 가족기업연구 제1권 제1호 : 5-24.

김가족· 이가족. 2002a. “미국 가족기업 경영 사례 연구”.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2호 : 15-34.

_____. 2002b. “중국가족기업 사례분석”. 가족기업연구 제3권 제3호 : 25-45.

김가족. 2003. 「가족기업학개론」 제2판. 세학사.

국세청. 2005. “아프리카의 가족기업학”. [http://www.nts.go.kr/\(생략\)/...htm](http://www.nts.go.kr/(생략)/...htm).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for External Financial Reports. 1977. *Statement on Accounting Theory and Theory Acceptance*. Sarasota, FL : AAA.

Auerbach, A., and K. Hassett. 1990. Investment tax policy and the Tax Reform Act of 1986. *In Do Taxes Matter :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edited by J. Slemrod. Cambridge, MA: MIT Press.

Bedard, J. C., and S. Biggs. 1990. Pattern recognition, hypothesis generation, and auditor performance in analytical review.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onnecticut.

Boness, J., and G. Frankfurter. 1977. Evidence of non-homogeneity of capital costs within risk classes. *Journal of Finance* (June) : 775-787.

Hendershott, P. H., and D. C. Long. 1984a. Trading and the tax shelter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National Tax Journal* 37 (2) : 213-214.

_____, and _____. 1984b. Prospective changes in the tax law and the value of depreciable real estate. *American Real Estate & Urban*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12 (Fall) : 297-317.

Slemrod, J., ed. 1990. *Do Taxes Matter :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Cambridge, MA : MIT Press.

Taussig, M. K. 1967. Economic aspects of the personal income tax treatment of charitable contributions. *National Tax Journal* 20 (1) : 1-19.

U.S. Congress, House. 1975. *Tax Equity Bill of 1975* [H.R. 1040]. 94th Cong., 1st Sess.

Witte, A. D., and D. F. Woodbury.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38 (1) : 1-14.

13. [논문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가족기업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기업연구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관련 학회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

제12조(논문파일발송과 게재료납부) 가족기업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고, 게재료는 게재신청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논문반환불가) 가족기업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4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 ①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되,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제2항에서 심사위원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라 함은 심사위원 1인은 “게재가능” 또는 “소폭수정”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다른 심사위원 1인은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경우를 말한다.
- ④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⑥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2만원(심사기한 3주내 심사완료시 3만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제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기각률(논문심사건수 중 “게재에 부적합함”의 건수의 비율) 및 심시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17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요약문의 포괄성과 가독성
5. 본문내용의 효과적 전달 및 기타사항

제18조(심사보고)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보고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수정보완 없이 게재,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게재에 부적합),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에 부적합한 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논문심사보고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정보완없이 게재 : 논문내용에 대하여 심사자가 만족하며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게재가능성이 높으나 논문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고려 :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 논리의 접근방법이나 연구방법론을 대폭 수정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게재에 부적합 :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가족기업연구에의 기여도 미흡 등으로 게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심사위원이 초심 및 재심의 심사의뢰를 받은 후 각각 3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촉구서를 발송하고, 심사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결과통보 및 수정논문의 제출)

- ① 편집위원장은 1차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부적합 혹은 저저포기)가 결정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의 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외부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추가하여 제17조의 4호 및 5호의 사항과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에 의한 연구윤리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재심)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이 지명된 경우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한 심사위원 대신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와 같은 심사와 논문의 수정·보완은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의견을 표명할 때까지 반복한다.

제21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표> 가족기업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

심사결과			처 리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 확정
게재가능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게재가능	대폭수정		
소폭수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소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대폭수정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확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소폭수정	게재불가	게재가능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소폭수정	수정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A, C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대폭수정	
		게재불가	
대폭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여기서 게재불가는 “게재에 부적합함” 의견을, 대폭수정은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소폭수정은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고려함” 의견을, 게재가능은 “수정·보완없이 게재함” 의견을 말한다.

제5장 논문편집

제22조(논문게재대상)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한다.

제23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25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후원기관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27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가족기업연구에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성명과 소속을 명시한다.

제6장 학회지배부

제28조(학회지 배부)

- ① 가족기업연구를 발행할 때마다 기관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1부, 후원기관에게 1부, 논문게재자에게 각 1부를 배부한다. 논문게재자에게는 학회지의 별쇄본 20부를 추가 배부한다. 다만, 회비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술지의 배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29조(학회지 판매)

- ①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학회지를 판매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외부기관에 학회지 논문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3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

되거나, 다른 학술지(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되는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학회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논문목록에서도 삭제
3. 해당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가족기업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사실 등 연구부정행위를 관련기관에 통보

제31조(논문내용의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2조(논문의 출판권과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의 양도)

- ① 논문의 출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에 대한 복사권·공중전송권·배포권을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게재신청을 가족기업연구에 할 수 없다.

제33조(비밀유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관리) 가족기업연구의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5조(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가족기업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가족기업연구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발행시기) 가족기업연구는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한다.

제37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가족기업연구의 논문을 학회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8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4.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의 건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 시상 규정

제정 2023년 04월 27일, 이사회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준거)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관 제4조(사업)에 준거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 가족기업 학술상 및 가족기업경영대상(이하 '학술·경영대상'이라 칭한다)은 가족기업경영 분야에서 경영이론 및 경영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와 경영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종류) 학술·경영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논문상
2. 우수논문발표상
3. 가족기업경영대상

제4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상패, 부상의 형태로 한다.

제2장 우수논문상

제5조(대상자) 최근 6개월 간의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6조(심사) 가족기업연구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상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 직전 6개월 간 『가족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때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시상시기) 우수논문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때 시상한다.

제3장 우수논문발표상

제8조(대상자)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족기업 관련 이론, 실증, 사례 등 가족기업연구 발전에 기여한 발표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제9조(심사)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수논문발표상의 심사는 포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우수논문발표상 포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위원을 위촉하되,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3.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가장 우수하게 발표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에 따라 이론, 실증, 사례 등 범주별로 우수발표논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상시기) 우수논문발표상은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대회 폐회 직전에 시상한다.

제4장 가족기업경영대상

제11조(대상자)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국내외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가족기업경영 발전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시상원칙) 이 상은 산업, 경제, 경영 등 제 부문에서 리더십과 투명성, 그리고 경영능력을 갖추고 가족기업경영의 발전으로 사회적 모범이 되는 가족기업경영인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전형기준)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혁신경영
 - ① 적정성장률(매출액, 당기순이익)
 - ② 경영전략
 - ③ 혁신경영
 - ④ 생산성향상
2.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윤리경영 실천
 - ① 가족기업경영이념 및 기업경영철학
 - ② 가족기업윤리강령 실천
 - ③ 사회적 책임 및 환경개선공헌도
 - ④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조정도
 - ⑤ 정도경영(가족기업경영투명성 및 회계·재무의 정도관리)
3. 가족기업경영자의 인품과 덕망
 - ① 혁신성
 - ② 리더십
 - ③ 성실성
 - ④ 인간존중

⑤ 책임성

4. 기타 경영능력

제14조(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수상자 선정을 위해 대상 포상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학계, 산업계, 언론계, 기타의 인사 중 경륜이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을 추천하되, 그 구성원은 7명으로 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2. 가족기업경영대상의 심사를 위해 회장은 1명의 간사를 임명한다.
3. 가족기업경영대상 포상위원회는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의 신청서, 추천서, 기타 수상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4.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후보)자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가족기업경영대상 수여) 가족기업경영대상 수상자에게는 공적을 기리는 내용의 상패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대상은 산업별, 기업별 등 부문별로 수상할 수 있다.

제16조(시상시기) 가족기업경영대상은 매년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나누어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과 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5. 감사선임의 건

임기만료 감사 노회구(세무법인 다솔)세무사

의안 6. 편집위원장 선임의 건

2023년도 편집위원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소속기관	지역구분
1	편집위원장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편집위원	김완용	승의여자대학교	서울
3	편집위원	김지희	미국 Canisius College	해외
4	편집위원	김창완	계명대학교	대구
5	편집위원	김태성	충북대학교	충북
6	편집위원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7	편집위원	장은록	중국 Yancheng Institute of Technology	해외
8	편집위원	정재현	동아대학교	부산
9	편집위원	최보람	조선대학교	전북

주) 위원구성: 8명(해외 2명, 서울 1명, 대구 1명, 경남 1명, 충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VIII. 공지사항 및 기타 논의사항

1. 『가족기업연구』 논문 투고 독려
2. 6월호 뉴스레터 답을 내용 보내주기
3. 회원 배가 운동

IX. 폐회

[연구윤리 교육자료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6.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7.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의 연구 활동과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학등 및 전문기관은 자체적인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의 사항을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2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하여 자체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및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자체 규정 마련)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이 지침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에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4.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5.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7.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제10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

런 증거를 해당 대학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하 "조사위원회"라 함)을 두어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대학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0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2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제22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

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 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의 재조사 요청 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학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이 지침 제3조제1항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후속조치 및

조사,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0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5.1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26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연구윤리 교육자료 2]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한국연구재단)

교육자료

부실 학술활동 예방하기

부실 학술지 및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CONTENTS

1	부실 학술활동이란?	03
2	부실 학술단체란?	04
3	부실 학술단체의 발생 배경은?	05
4	부실 학술지/학술대회 점검 방법	06
5	부실 학술지/학술대회에 대한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07
6	맺음말	10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1
붙임1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특징	12
붙임2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	13
붙임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15



1 부실 학술활동이란?¹⁾

▶ 부실 학술활동이란?

-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제반 활동이 부실한 것을 의미, 다음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명백하게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있는 학술활동
 - ⇒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 ②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로 분류할 수 없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
 - ⇒ 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s (QRP)



▶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QRP)란?

- 연구활동의 전통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구 프로세스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 프로세스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과학의 다양한 전통적 관습을 위협합니다.



- **예시** ①중요한 연구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지 않는 것, ②연구 기록의 부적절한 관리, ③논문 저자 기재에 있어서의 문제, ④연구 시료·연구 데이터의 제공 거절, ⑤불충분한 연구지도와 학생 착취, ⑥**연구 성과의 불성실한 발표(학술지 또는 학술대회 논문 발표 등)**

※ 출처 :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sponsible Science: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Process", Vol.1.,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2. (재인용, 日本(學術振興會(2015), 科学の健全な発展のために - 誠実な科学者の心得 -)

¹⁾ 이 자료는 2021 국내 연구윤리 포럼(2021.9.14.)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부실 학술단체-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수록된 내용을 재활용한 것임.

2 부실 학술단체란?2)



▶ 부실 학술단체 개념 정의의 특징

- 명확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실 학술단체 List는 없습니다.

▶ 부실 학술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학술단체가 무엇인지 함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 학술단체와 달라 지나치게 금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단체입니다. <p>⇒ 통상 정당한 학술단체처럼 보이게 하여 연구자를 속이고 연구자의 노력을 약탈하기 때문에 Predatory(Hijacked, Fake, Bogus) Publisher(Journal/Conference)라고 합니다.</p>
한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학회(2018.9.13., 과기부 보도자료) :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술대회. 기짜학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어 '부실학회'로 표현합니다.

▶ Beall's List

- 2000년대 말부터 콜로라도덴버대학교 사서였던 Jeffery Beall이 본인이 만든 부실추정저널 리스트(Beall's List)를 공개한 후부터 부실 학술단체 이슈가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긍정 의견	부정 의견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AME) 권고
부실한 저널리스트를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전문가 검증 없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다.	특정 학술지가 Beall's List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Beall은 2008년부터 부실 학술단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처음에는 관련분야 종사자들과 위키피디아의 익명 포스터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였으나, 2012년 1월에 'Scholarly Open Access'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약탈적 출판사와 저널 리스트를 공개하여 왔으나, 2017년 1월에 동 블로그를 폐쇄하였습니다.

※ 출처 : Beall, J. (2017). What I learned from predatory publishers. *Biochemia medica: Biochemia medica*, 27(2), 273-278.

2) 2021 국내 연구윤리 포럼(2021.9.14.)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부실 학술단체-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수록된 내용을 재 활용한 것임.

3 부실 학술단체의 발생 배경은?³⁾

▶ Publish or Perish 환경

- 연구자들은 연구업적에 근거하여 임용, 승진, 과제선정, 과학공동체 내의 인정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논문 게재에 적극적입니다.
- 특히 연구업적평가를 논문의 질(영향력)보다는 평가방법의 편리성·객관성·경제성 등을 이유로 계량실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연구계 내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 연구자들은 정량지표(논문 수등)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쉽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부실 학술단체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 부실 학술단체 이용자의 유형

기여자 유형	주요 특징
순진한 기여자 (Naive contribu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이 없거나 순진하거나 잘난 척 하지 않는 사람들 • 약탈적 학술지나 학회에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 • 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평판에 손상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됨
인식하는 기여자 (Cognizant contribu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나 연구 쪽의 직업을 갖길 원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 • 약탈적 학술지·학회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 승진, 고용 등을 위해 이력서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자 게재 및 참가
가짜 과학자 (Pseudo-scient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및 학문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생각과 의심스러운 믿음을 지닌 사람들 •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결과, 불합리한 이론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

※ 출처 : Eaton, S.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s: A resource Guide*. (2018) University of Calgary

▶ 저널 출판비용(APCs, Article Processing Charges) 조달구조의 변화

인터넷 보급 이전 (1990년대 중반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구독기반 유료저널] 학회와 출판사는 구독료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Peer Review를 실시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 게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터넷 보급 이후 (1990년대 후반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A저널의 등장] 출판사가 저자에게 APCs를 받고 해당 논문은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OA 출판모델이 등장하였고, 이를 악용해 제대로 된 Peer Review 없이 고액의 APCs만 받아 챙기는 약탈적 학술단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자료는 2021 국내 연구윤리 포럼(2021.9.14.)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부실 학술단체-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수록된 내용을 재사용한 것임.

4 부실 학술지/학술대회 점검 방법⁴⁾

- 특정한 학술지나 학술대회가 부실한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실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Jeffrey Beall의 부실 학술단체 식별기준을 참고하여 학자들이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는데 Grudniewicz et al (2019)에 따르면 특정 저널의 부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체크리스트가 90개 이상 존재합니다.
- 이에 각 기관은 해당기관의 사정에 맞게 부실 학술지/학술대회 점검방법 등을 마련하되,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경우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https://safe.koar.kr>)을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4) 이 자료는 2021 국내 연구윤리 포럼(2021.9.14.)에서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장이 발표한 “부실 학술단체-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수록된 내용을 재촬영한 것임.

5 부실 학술지/학술대회에 대한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⁵⁾

▶ 설문조사 배경 및 개요

- 본 조사는 부실 학술활동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총 3,268명의 연구자가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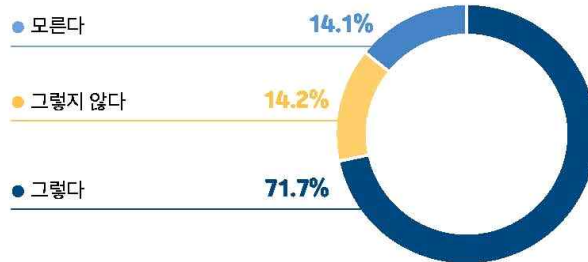
설문대상	28,627명 - 최근 2년간 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
설문기간	2022년 4월 18일 ~ 2022년 4월 29일
설문응답	3,268명 (76.5%가 대학교수)
설문내용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 관련 설문 (연구업적평가에 대한 인식 +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에 대한 인식) ※ 이번 호에는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소개



5) 본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이 2022년에 지원한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적평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건국대 노영희 교수)”를 통해 확보된 것입니다.

▶ 설문조사 결과

1 해외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가 존재 한다고 생각하는가?



2 해외 부실의심 학술지의 대표적 특징은?

(응답순위 7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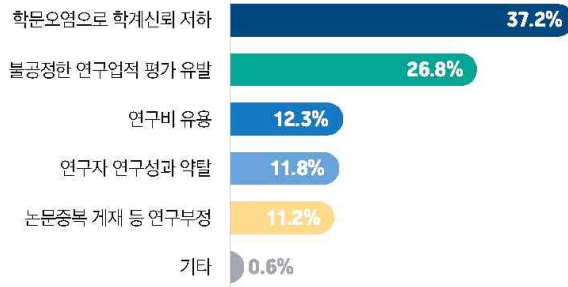


3 해외 부실의심 학술대회의 대표적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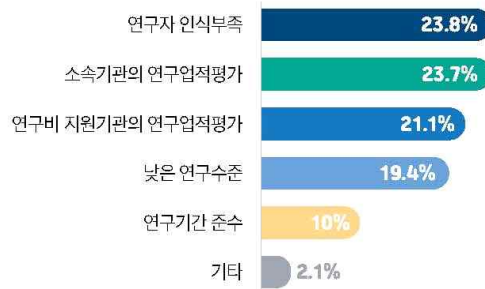
(응답순위 7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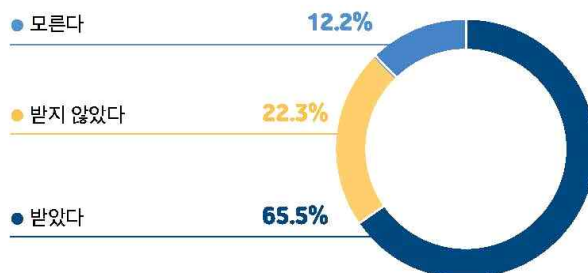
4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이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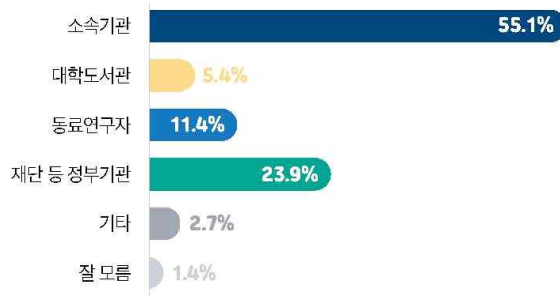
5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이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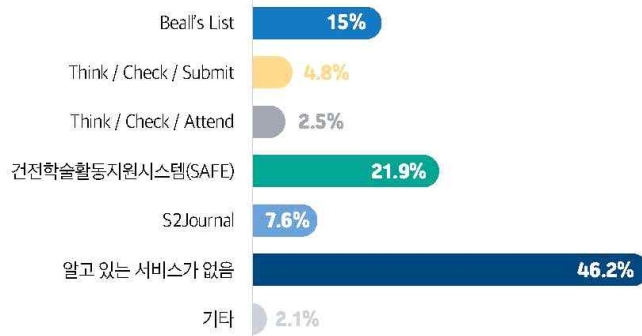
6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참여 예방 안내를 받았는가?



7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참여 예방 안내를 받은 경로는?



8 알고 있는 건전 또는 부실의심 학술지/학술대회 식별 서비스는?



6 맺음말

- 부실한 학술지나 학술대회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인된 방법이나 리스트는 없으나, 부실 또는 악탈적 학술지/학술대회가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따라서, 평소 잘 알지 못하는 학술지나 학술대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원로학자들에게 물어 보거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가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통해 해당 학술지나 학술대회의 평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2018.10.0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급증하여 건전한 학술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에 근거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 등'이라 함)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이하 '연구책임자 등'이라 함)이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 본 권고사항은 연구책임자 등이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 시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표할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합니다.
 - ※ 참고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의 발표가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합니다. 부실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은 <붙임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연구기관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과제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 등은 소속 연구자들이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소속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 ※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 아울러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고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 ※ 참고로 평소에 잘 모르는 학술단체를 활용(참가 또는 논문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3>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5. 권고사항의 실효성 점검

- 한국연구재단은 주관연구기관 등과 연구책임자 등이 본 권고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특징

▶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 [출판]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이 생략된다.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된다.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매우 짧다(1개월 이내).
- [양식] 논문 제출 양식(format)이 조악하다.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 [비용]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된다.
- [광고]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한다.
- [단체명] 학술지 명칭에 World, International, Global과 같은 형용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World, International, Global로 시작하는 저널 중에도 우수 저널이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학회위치] 학회 사무국이 선진국(미국, 유럽, 호주 등) 도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 [영향력지수]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가 높다고 언급한다.
- [주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가 없다.

※ 참고 : Mohammad Hemmat Esfe et al (2015), Fake Journals: Their Features and Some Viable Ways to Distinguishing Them, Sci Eng Ethics (2015) 21:821-824.

▶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

- [이메일 계정] gmail, hotmail 등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을 사용한다.
- [참석]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학회참여증서를 준다고 선전한다.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 [운영위원] 학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 무단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다른 연구자들을 현혹한다.
- [학회날짜] 초록 마감일, 논문 제출일, 학회일 등이 자주 변경된다.
- [현혹] 무료 숙박·숙식·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여 연구자를 현혹한다.
- [학회장소]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 [지불방식] 일반적인 학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학회비를 지불하는 반면 부실 학회는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
- [명성이용] 해당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한다.



- **[학회프로그램]**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애매하고 토론자나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 **[초청방식]** 일반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해(e.g. call for papers) 모집하지만 부실학회는 연구자에게 직접 초대 이메일을 보낸다(e.g. You are invited).
※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한다.
- **[참석증서]** 참가비를 지급 후 학회날짜 전에 학회참석증서를 발급한다.
- **[강연자 초청옵션]** 일반학회는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지만 부실학회는 일정금액을 내면 원하는 강연자를 초청해준다고 약속한다.
- **[부실 테스트]** AI 등으로 작성한 이상한 논문 초록을 시험 삼아 보내보고 그 논문 초록이 학회에 초청되면 부실학회이다.

※ 참고 : Amin Asadi et al (2018), Fake/Bogus Conferences: Their Features and Some Subtle Ways to Differentiate Them from Real Ones, Sci Eng Ethics (2018) 24:779-784.

붙임2 |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https://beallslist.weebly.com/	Beall이 작성한 부실 학술지 리스트(매주 갱신)
https://predatoryjournals.com	논문심사 없이, 또는 허술한 심사를 통해 연구자들로부터 논문 게재료 이윤만 챙기는 "약탈적(Predatory) 출판사의 영리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올리스트(Beall's List)에 기초한 자격미달 학술지목록(블랙리스트)을 제공하는 비영리 웹사이트
http://thinkchecksubmit.org	연구자가 저널이나 출판사의 지명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Think/Check/Submit 캠페인)
https://thinkcheckattend.org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와 기피해야 할 학회를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Think/Check/Attend 캠페인)
https://libguides.caltech.edu/c.php?g=512665&p=3503029	Caltech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부실 학술단체와 컨퍼런스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79189.pdf	캐나다 캘거리대학에서 만든 부실 학술지 및 학술대회 회피 가이드북 (2018년 제작)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6/08/academics-and-scientists-beware-predatory-journal-publishers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성명서 - Academics and scientists: Beware of predatory journal publishers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od-18-011.html	미국 국립보건원(NIH) 성명서 - Statement on Article Publication Resulting from NIH Funded Research
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s://doaj.org/bestpractic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the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 and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 Beall's List 활용 시 주의 사항

- Beall의 Publisher list 중에 특정출판사가 다수의 학술지를 보유한 경우, 한 두 개가 약탈적 저널임에도 그 출판사가 펴내는 모든 저널이 약탈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 Beall's list는 시간적 척도가 없어 언제 특정 저널이 약탈적 저널로 분류되었는지 알기 어려우며 과거에는 동료심사를 거쳤던 저널이 현재에는 약탈적 저널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 리스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추적이 어렵다**.



※ 참고 : VÍT MACHÁČEK & MARTIN SRHOLEC (2017)

붙임3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예시)

▶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절한 동료심사를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②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③ 편집위원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④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⑤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Submit 캠페인**(<http://thinkchecksubmit.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절한 동료심사 및 발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③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④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 ⑤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더 상세한 점검을 위해서는 **Think/Check/Attend 캠페인**(<https://thinkcheckattend.org>)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본 교육 자료는 그간 연구재단이 부실 학술활동 예방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던 자료와 정책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연구윤리지원센터 윤리정책팀 (042-869-6649)

